

IV. 각종 수속

1. 혼인 · 이혼 · 출생 · 사망 수속

(1) 결혼

① 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

재일본의 자국 대사관 · 영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취득하여, 여권(원본)과 혼인 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중인 관공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의해 필요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는 관공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외국 국적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

일본 법률에 따라 결혼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재일본의 자국 대사관 · 영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취득한 후 여권 (원본)과 혼인 신고서를 주민 등록중인 관공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의해 필요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는 관공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혼

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인 사람과 일본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이혼 합의가 되어 있으면 일본 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수리 됨으로써 일본에서의 이혼이 성립합니다.

②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이혼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는 관공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 · 이혼 주의사항 ■■

• 일본에서 성립한 혼인 · 이혼은 자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본 법률에 따라 성립된 혼인 · 이혼이 본국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혼의 신고 수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국의 대사관·영사관과 신고하는 일본의 관공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 · 이혼에 따른 재류 자격과 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입국 관리국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특별 영주자 분은 주소지 구청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일본인인 배우자, 또는 상대의 가족으로서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혼에 따라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류 자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 계속 체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류에 관한 점 오사카 입국관리국 ☎ 06-4703-2115

(3)출생

☆ 생활 가이드 22 페이지「(2) 아기가 태어나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4)사망

일본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살고 있는 관공서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주의■■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 포함)는 입국 관리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한 사람의 본국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금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요 세금의 종류와 문의처 ※ 일본어대응

세금 종류	문 의 처	연 락 처
소득세	스이타시세무서	☎ 06-6330-3911
시민세 • 부민세	스이타시시청시민세과	☎ 06-6384-1248
고정자산세	스이타시시청자산세과	☎ 06-6384-1245
자동차세	오사카후자동차세콜센터	☎ 0570-020-156
경자동차세	스이타시청세제과	☎ 06-6384-1243

●기타 세금

소비세 : 모든 물품의 구입,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그 외 : 부동산 취득 및 자동차구입 등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3.인감 등록

여러분의 인감을 여러분 개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인감 등록이라 합니다. 등록된 인감은 집이나 차를 사고 팔 때 필요하며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문의처 스이타시 시민과 ☎ 06-6384-1237